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종결하게 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 방법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등이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
2.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상태를 사전 조사
3. 계약체결 -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계약 체결하나 수급자 본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계약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고 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은 계약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 시간 및 일자를 통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확정
5.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정서,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6.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 비용 청구
7.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하여 보완 진행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④ 3회 이상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⑦ 수급자 및 보호자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2.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월 이용료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 01.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6. 01. 기준)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화개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3. 방문요양 1회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2026. 01. 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4. 방문목욕 1회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2026. 01. 기준)

구 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5. 그 밖의 이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외에 외부활동 등에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력 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금액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 및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 의무
- ⑦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